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제1편 제21장 국민건강보험법 51~52p	개념,공식-설명	<p>(1) 벌칙(제115조)</p> <p>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</p> <p>2.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</p> <p>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제42조의2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</p> <p>2. 제4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</p> <p>3.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</p> <p>4. 제98조 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</p>	<p>(1) 벌칙(제115조)</p> <p>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</p> <p>2.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</p> <p>③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제42조의2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</p> <p>2. 제47조 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</p> <p>3.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</p> <p>4. 제98조 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</p>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제1편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82~83p	개념,공식-설명	<p>(1) 관리운영기관 등(제48조)</p> <p>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.</p> <p>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관리 2.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·징수 3. 신청인에 대한 조사 4.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.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.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.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·안내·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.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.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.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홍보 11.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.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·징수 등 13.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.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<p>③ 공단은 제2항 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,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·기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기요양보험료 2. 장기요양급여 3.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	<p>(1) 관리운영기관 등(제48조)</p> <p>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.</p> <p>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관리 2.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·징수 3. 신청인에 대한 조사 4.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.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.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.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·안내·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.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.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.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홍보 11.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.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·징수 등 13.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.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<p>③ 공단은 제2항 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,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·기재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기요양보험료 2. 장기요양급여 3.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제1편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91~92p	개념,공식-설명	<p>(1) 벌칙(제67조)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31조(장기요양기관의 지정)를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삭제(2018. 12. 11) 제35조(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) 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제35조(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) 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,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제62조(비밀누설금지)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35조(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)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(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)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37조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) 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 <p>③ 제61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장기요양기관은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	<p>(1) 벌칙(제67조)</p> <p>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31조(장기요양기관의 지정)를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삭제(2018. 12. 11) 제35조(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) 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제35조(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) 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,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제62조(비밀누설금지)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35조(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)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(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)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37조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) 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 <p>④ 제61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장기요양기관은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제2편 제2회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168~168p 번호 : 18	해설	<p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관리 2.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·징수 3. 신청인에 대한 조사 4.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.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.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.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·안내·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.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.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.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홍보 11.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.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·징수 등 13.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.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	<p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관리 2.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·징수 3. 신청인에 대한 조사 4.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.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.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.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·안내·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.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.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.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홍보 11. 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.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·징수 등 13.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.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
제2편 제4회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179~179p 번호 : 2	해설	<p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4. 제37조 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 	<p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4. 제37조 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
제2편 제5회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183~183p 번호 : 11	해설	<p>오답분석 ①·②·④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</p>	<p>오답분석 ①·②·④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5항</p>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제2편 제5회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185~185p 번호 : 1	해설	<p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</p> <p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37조 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 	<p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3항</p> <p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37조 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